

제211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2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이 용 주 의원 발의】



2018. 12. 12.

社 會 建 設 委 員 會  
專 門 委 員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친화도시 구성에 관한 조례안』

## 檢 討 報 告 書

### 1. 경 과

의안 제63호로 2018년 11월 13일 이용주 의원 외 3명으로부터 발의되어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2. 제안이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이 행복한 임신·출산·육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 및 사업을 운영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출산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나. 출산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다. 출산친화도시 조성기준 및 기본사업에 규정(안 제6조~제7조)

라. 출산친화도시 조성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 제8조~13조)

####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입법예고(2018. 11. 8. ~ 11. 13.):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구민이 행복한 임신·출산·육아 생활을 할 수 있는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 및 사업을 운영하고자 제안된 조례안으로 총 14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주요 제정 내용은

- 안 제1조~제2조까지는 조례 제정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 구청장의 책무로 지역협력 시스템 구축, 임신·출산·육아 등 생애 주기별 건강관리 및 복지증진, 공공시설 이용

배려 및 지역특성화 사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였으며

- 안 제4조에서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하여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 안 제6조~제7조에서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준을 정하고 기본사업으로 출산장려·양육경감, 모자보건·건강증진 등 4가지 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 안 제8조~제13조까지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제안 및 자문을 위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국가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부서별로 산재되어 추진되고 있는 출산친화도시 관련 사업들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령의 범위안에서 영등포구 출산친화도시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출산율 유지·발전 환경이 중요시됨에 따라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관 련 법 령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